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김영진 · 안도걸

임오경·조 국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로 경우에는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 용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u>90일</u>	12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	한 경우에는 150일)		
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 <u>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u>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임신한 경우에는 90일)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2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		
기간은 연속하여 <u>45일(한 번에</u>	<u>60일(한 번에</u>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u>는 60일)</u> 이상이 되어야 한다.	<u>는 90일)</u>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